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5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6월 20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‘화장실’ 로만 명시된 조항들을 ‘화장실 등’ 으로 수정하여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확대하려는 것임.
- 그러나 안 제5조2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의 경우, 화장실 설치시와 설치된 화장실을 구분하여 불법촬영 예방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,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할 경우 본래의 취지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- 따라서, 안 제5조2 제1항 및 제2항은 개정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5조의2를 삭제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2를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
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5조의2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에 <u>화장실 설치 시</u>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둘 수 있다.	제5조의2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 ① - ----- ----- <u>설치한 화장실 등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5조의2(불법촬영 예방 시설물 설치기준) ① <u><삭 제></u>
② 교육감은 기존 설치된 <u>화장실</u> 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대변기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의 빈 공간을 5mm 이하로 두기 위해 <u>안심스크린</u>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	② ----- <u>화장실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② <u><삭 제></u>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화장실”을 “화장실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“화장실 등”이란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관(이하 “기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기관”으로, “화장실을 말한다”를 “화장실 등에 적용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화장실”을 각각 “화장실 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화장실”을 “화장실 등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화장실”을 “화장실 등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화장실”을 “화장실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화장실”을 “화장실 등에서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의 <u>화장실에서</u>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 <u>화장실 등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 <u>신 설</u> 〉 1. ~ 3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“ <u>화장실 등</u> ”이란 화장실, 탈의실, 샤워실,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. 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<u>기관(이하 “기관”이라 한다)</u> 에 설치되어 학생,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<u>화장실을 말한다</u> . 1. · 2. (생략)	제3조(적용범위) ----- <u>기관</u> ----- ----- <u>화장실 등에</u> <u>적용한다</u> . 1. · 2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<u>화장실을</u>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예방과 근절에 필	제4조(책무) ① ----- ----- -- <u>화장실 등</u>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교육감은 <u>화장실</u>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·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제6조(전문인력 확충) ① 교육감은 <u>화장실</u> 불법촬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 제7조(신고체계의 마련)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의심되는 <u>화장실</u>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 제8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<u>화장실</u>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제9조(협력체계의 구축) 교육감은 <u>화장실</u> 불법촬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·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	-----. ② ----- <u>화장실</u> 등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6조(전문인력 확충) ① ----- <u>화장실</u> 등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7조(신고체계의 마련) ----- ----- <u>화장실</u> 등----- -----. 제8조(실태조사) ----- <u>화장실</u> 등----- ----- ----- -----. 제9조(협력체계의 구축) ----- <u>화장실</u> 등에서의 ----- ----- ----- -----.